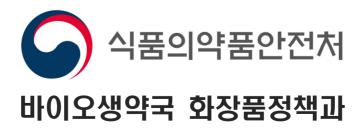
#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 (민원인 안내서)

2020. 5.



## 지침 • 안내서 제·개정 점검표

명칭

##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

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아데에 해당하는 사왕에 제그하여 구시기 마립니다.		
	□ 이미 등록된 지침·안내서 중 동일·유사한 내용의 지침·안내서가 있습니까?	<ul><li>□ 예</li><li>■ 아니오</li></ul>	
	☞ 상기 질문에 '예'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·안내서의 개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·안내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사유:		
	□ 법령(법·시행령·시행규칙) 또는 행정규칙(고시·훈령·예규)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?	<ul><li>□ 예</li><li>■ 아니오</li></ul>	
등록대상 여부	□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?	□ 예 ■ 아니오	
	<ul><li>□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·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?</li></ul>	<ul><li>□ 예</li><li>■ 아니오</li></ul>	
	□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?	□ 예 ■ 아니오	
	□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 입니까?	<ul><li>□ 예</li><li>■ 아니오</li></ul>	
	☞ 상기 시항 중 어느 하나라도 '예'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·안내서 등록 지침·안내서 제·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	대상이 아닙니다.	
지침서 • 연내서 구분	□ 내부적으로 행정시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시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? (공무원용)	□ 예(☞ <mark>지침</mark> ) ■ 아니오	
	□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사·훈령·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? (민원인용)	■ 예(☞ <mark>안내</mark> ~) □ 아니오	
기타 확인 사항	□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·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?	<ul><li>□ 예</li><li>■ 아니오</li></ul>	
	☞ 상기 질문에 '예'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 안내서 제·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	시고 지침서 •	
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.			
2020년 5월 일			
	담당자 확 인(부서장)	유 병 욱 최 미 라	

이 안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.

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('~하여야 한다' 등)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본 안내서는 2020년 5월 현재의 과학적·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"민원인 안내서"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·훈령·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(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)

※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화번호: 043-719-3415, 팩스번호: 043-719-3400

## 제.개정 이력

##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

연번	제·개정번호	승인일자	주요내용
1	안내서-1025-01	2020.5.12.	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신고, 영업자 준수사항 등

# 목 차

1.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 6
2.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8
3.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 10
4.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11
5.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14
6. 맞춤형화장품의 표시18
7.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19

## 1

##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범위

## [1] 맞춤형화장품 정의

-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·향 등 취향에 따라,
  -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, 향료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워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
  -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(小分)한 화장품 단, 화장 비누(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)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

## (2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정의

O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

영업의 종류	영업의 범위		
화장품 제조업	①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②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③ 화장품의 포장(1차 포장만 해당한다)을 하는 영업		
화장품 책임판매업	①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·판매하는 영업 ②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는 영업 ③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는 영업 ④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·수여하는 영업		
맞춤형화장품 판매업	<ul> <li>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</li> <li>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</li> </ul>		

## (3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의 범위

- O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음
  -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 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
  -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

구분	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의 범위		
र्ट ठी-	내용물 (벌크제품)	+	내용물 (벌크제품)
혼합	실 내용물 (벌크제품)	4	특정 성분 (단일 원료 또는 혼합 원료)
소분	내용물 (벌크제품)	<b>:</b>	

#### ※ 참고사항

☞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'화장품 제조'에 해당

## 2

##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

## (1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

O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을 신고하여야 함

O 신청방법 :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(nedrug.mfds.go.kr) 전자민원, 방문 또는 우편

O 처리기한 : 10일

○ 수 수 료 : 전자민원 27,000원, 방문 · 우편민원 30,000원

O 제출 서류

구분	제출 서류			
기본	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(2인 이상 신고 가능)			
기타 구비서류	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포함) ② 건축물관리대장 ③ 임대차계약서(임대의 경우에 한함) ④ 혼합·소분의 장소·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			

### (2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

- O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
  -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변경(판매업자의 상호, 소재지 변경은 대상 아님)
  -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
  -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
- O 신청방법 :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(nedrug.mfds.go.kr) 전자민원, 방문 또는 우편
- O 처리기한 : 10일(단, 조제관리사 변경신고는 7일)
- O 수 수 료 : 전자민원 9,000원, 방문 · 우편민원 10,000원
  - \* 조제관리사 변경의 경우 수수료 없음

#### O 제출 서류

구분	제출 서류			
공통	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 ②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(기 신고한 신고필증)			
판매업자 변경	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 ②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상속의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			
판매업소 상호 변경	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			
판매업소 소재지 변경	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 ② 건축물관리대장 ③ 임대차계약서(임대의 경우에 한함) ④ 혼합·소분 장소·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			
조제관리사 변경	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			

## (3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폐업 등의 신고

○ 신고대상 : 폐업 또는 휴업,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

O 신청방법 :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(nedrug.mfds.go.kr) 전자민원, 방문 또는 우편

O 처리기한 : 7일

O 수 수 료 : 해당없음

O 제출 서류

구분	제출 서류		
공통	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·휴업·재개 신고서 ②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(기 신고한 신고필증)		

##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

#### [1]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범위

-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
  -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·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
  - ②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·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·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

#### (2) 맞춤형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

- O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는 혼합에 사용 가능
  - ①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」 [별표 1]의 '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'
  - ②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」 [별표 2]의 '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'
  - ③ 식약처장이 고시(「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」)한 '기능성화장품의 효능 •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'. 다만, 「화장품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 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 가능
    - ☞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해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
    - ☞ 원료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되는 색소, 향, 기능성 원료 등이 해당되며 이를 위한 원료의 조합(혼합 원료)도 허용
    - ☞ 기능성화장품의 효능·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내용물과 원료의 최종 혼합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기 심사(또는 보고) 받은 경우에 한하여, 기 심사(또는 보고) 받은 조합·함량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

## 4

##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

### [1]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

-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·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
- O 혼합·소분 안전관리기준
  - ①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및 원료의 혼합·소분 범위에 대해 사전에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
    - 내용물 및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 할 것
      - ☞ 최종 혼합된 맞춤형화장품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 하고, 적합한 범위 안에서 내용물 간(또는 내용물과 원료) 혼합이 가능함
  - ② 혼합·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는 「화장품법」 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여 사용할 것
    - ☞ 혼합·소분 전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함(다만, 책임 판매업자에게서 내용물과 원료를 모두 제공받는 경우 책임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성적서로 대체 가능)
  - ③ 혼합·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. 다만, 혼합·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예외
  - ④ 혼합·소분 전에 혼합·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여부를 확인 할 것
  - ⑤ 혼합·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,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
  - ⑥ 혼합·소분 전에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,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아니 할 것

- ⑦ 혼합·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 하여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 것
- 8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및 원료는 밀폐를 위한 마개 를 사용하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 할 것
- ⑨ 소비자의 피부상태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·소분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
- 최종 혼합·소분된 맞춤형화장품은 「화장품법」 제8조 및 「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」 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
  - 특히, 판매장에서 제공되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관리를 철저히 할 것(예 : 주기적 미생물 샘플링 검사)
    - ☞ 혼합·소분을 통해 조제된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으로 "유통 화장품"에 해당
- 맞춤형화장품판매내역서를 작성·보관할 것(전자문서로 된 판매내역을 포함)
  - ① 제조번호(맞춤형화장품의 경우 식별번호를 제조번호로 함)
    - ☞ 식별번호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제조번호와 혼합·소분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숫자·문자·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조합으로 부여한 번호임
  - ②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
  - ③ 판매일자 및 판매량
-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, 사용, 폐기 내역 등에 대하여 기록 관리 할 것
- O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
  - 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특성
  - ②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

- O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
  - ☞ 맞춤형화장품의 부작용 사례 보고(「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」에 따른 절차 준용)
  -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유해사례 등 부작용 발생 시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우편·팩스·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.
  - ① 중대한 유해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: 「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(식약처 고시)」 별지 제1호 서식
  - ②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:「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(식약처 고시)」 별지 제2호 서식

### [2] 그 밖의 사항

- O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 등을 기록·보관하여 관리 할 것
- O 고객 개인 정보의 보호
  -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할 것
  -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판매내역서 작성 등 판매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객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, 수집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  - ☞ 소비자 피부진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연구·개발 등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 소비자에게 별도의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한다. 아울러 이를 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

#### [1]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시설기준

- O 맞춤형화장품의 품질·안전확보를 위하여 아래 시설기준을 권장
  -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할 것

☞ 구분 : 선, 그물망, 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

☞ 구획 : 동일 건물 내에서 벽, 칸막이, 에어커튼 등으로 교차오염 및 외부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

- ※ 다만,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기계를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경우에는 구분·구획된 것으로 본다.
- 맞춤형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확보할 것
-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 할 것

### (2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

- O 작업자 위생관리
  - 혼합·소분 시 위생복 및 마스크(필요시) 착용
  - 피부 외상 및 증상이 있는 직원은 건강 회복 전까지 혼합 소분 행위 금지
  - 혼합 전·후 손 소독 및 세척



- O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 장소의 위생관리
  - 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와 판매 장소는 구분 구획하여 관리
  - 적절한 환기시설 구비
  - 작업대, 바닥, 벽, 천장 및 창문 청결 유지
  - 혼합 전·후 작업자의 손 세척 및 장비 세척을 위한 세척시설 구비
  - 방충·방서 대책 마련 및 정기적 점검·확인



- O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 장비 및 도구의 위생관리
  - 사용 전·후 세척 등을 통해 오염 방지
  - 작업 장비 및 도구 세척 시에 사용되는 세제·세척제는 잔류하거나 표면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사용
  - 세척한 작업 장비 및 도구는 잘 건조하여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 방지
  - 자외선 살균기 이용 시,
  - ① 충분한 자외선 노출을 위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장비 및 도구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한 층으로 보관
  - ② 살균기 내 자외선램프의 청결 상태를 확인 후 사용



- O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 장소, 장비·도구 등 위생 환경 모니터링
  -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 장소가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주기를 정하여 판매장 등의 특성에 맞도록 위생관리 할 것
  -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는 작업자 위생, 작업환경위생, 장비·도구 관리 등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환경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기록 하고 판매업소의 위생 환경 상태를 관리 할 것

#### 〈 맞춤형화장품판매장 위생점검표 예시 〉

맞춤형화장품판매장 위생점검표			점검일 년		
			업소명		
항 목	점 검 내 용			록	
				예	아니오
	작업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?				
	위생복장과 외출복정	아이 구분되어 있	는가?		
	작업자의 복장이 청	결한가?			
작업자 위생	맞춤형화장품 혼합	소분 시 마스크	를 착용하였는가?		
	맞춤형화장품 혼합	소분 전에 손을	씻는가?		
	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가?				
	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 시 위생장갑을 착용하는가?				
_,_,_,	작업장의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?		작업대		
작업환경 위생			벽, 바닥		
., 0	쓰레기통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가?				
	기기 및 도구의 상태가 청결한가?				
장비·도구	기기 및 도구는 세척 후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였는가?				
관리 관리	사용하지 않는 기기 및 도구는 먼지,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가?				
	장비 및 도구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?				
특이사항 개선조치 및 결과		히 및 결과	조치자	확인	

## (3)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관리

- O 내용물 또는 원료의 입고 및 보관
  - 입고 시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성적서를 구비
  - 원료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 (예: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등)
  - 원료 등의 사용기한을 확인한 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, 사용기한이 지난 내용물 및 원료는 폐기

〈 내용물 및 원료 보관 예시 〉

#### 선반 및 서랍장에 보관하는 경우









#### 냉장고를 이용하여 보관하는 경우









# 맞춤형화장품의 표시

- O 맞춤형화장품 표시·기재 사항
  -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1차·2차 포장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

구분	표시·기재 사항
	<ul> <li>⟨1차 포장⟩</li> <li>1. 화장품의 명칭</li> <li>2. 영업자(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,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)의 상호</li> <li>3. 제조번호</li> <li>4.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연월일 병기)</li> </ul>
맞춤형화장품	<ul> <li>(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〉</li> <li>1. 화장품의 명칭</li> <li>2. 영업자(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,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)의 상호 및 주소</li> <li>3.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(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)</li> <li>4.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</li> <li>5. 제조번호</li> <li>6.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연월일 병기)</li> <li>7. 가격</li> <li>8.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"기능성화장품"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</li> <li>9.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</li> <li>10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li>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・효과, 용법・용량</li> <li>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(방향용제품은 제외한다)</li> <li>인체 세포・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</li> <li>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・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</li> <li>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"질병의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"이라는 문구</li> <li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・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</li> <li>가.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</li> </ul>
	나.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임을 특정하여 표시·광고하려는 경우

#### 〈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〉

소용량 또는 비매품

- 1. 화장품의 명칭
- 2.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
- 3. 가격
- 4.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연월일 병기)
- ☞ 맞춤형화장품의 가격표시는 개별 제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거나,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,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## 7

##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

- O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정의
  -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·소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- O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
  - 맞춤형화장품판매장의 조제관리사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4시간 이상,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식약처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이수 할 것
    - ☞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교육실시기관
      - (사)대한화장품협회. (사)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. (재)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
- O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
  -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둘 것
  -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의 업무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자격증을 가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이 할 수 있음